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215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9. 6.

발 의 자 : 고영찬, 윤영희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(안 제4조)
- 다. 의원연구단체의 심의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의원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8조)
- 마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(안 제10조)
- 바.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2. 9. 7 ~ 9. 14.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”란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연구단체의 활동비(이하 “연구활동비”라 한다)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3. “의원정책개발비”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,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,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.

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.

제4조(등록)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 라고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,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,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단체의 심의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
3.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·배분·회수에 관한 사항
4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- 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**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20%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**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연구단체 등록취소)**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 2.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3.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
 4.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제11조(연구단체의 활동 및 존속기한) ①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시점으로 한다.

제12조(공동참여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)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1. 연구단체명 :
- 2. 설립목적 :
- 3. 연구주제 :
- 4. 단체 인적사항

연번	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서명	비고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연구활동 계획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내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	~ 년 월 일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 활동비	총 액	금 원(₩)	
	산출내역	(세부내역 별첨)	
기 타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변동의원	당초	의원
	변경	의원
변동일자	년 월 일	
변동사유		
기타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
대표자	
연구주제명	
심의·의결내용	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: (인)

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

연구활동 결과보고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	~ 년 월 일	
연구내용	연구주제			
	연구목적			
연구활동비	수령액	금	원(₩)	
	집행액	금	원(₩)	
	잔 액	금	원(₩)	
	집행내역	자료수집 및 조사비	금	원(₩)
		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	금	원(₩)
전문가 활동 경비		금	원(₩)	
기 타		금	원(₩)	
의원정책 개발비	수령액	금	원(₩)	
	집행액	금	원(₩)	
	잔 액	금	원(₩)	
특기사항		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		

- 붙 임 1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
 2.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.
 3.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7호 서식]

연구활동 중간보고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연구내용	연구주제	
	연구목적	
최초 연구 기간		
연장 신청 기간		
기간 연장사유		
특기사항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
-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14조(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)

-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,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,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